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72
----------	------

발의연월일 : 2017. 6. 23.

발의자 : 조승래 · 이용득 · 신경민
민홍철 · 오영훈 · 고용진
김민기 · 송옥주 · 신동근
심재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2. (생 략)</p> <p>③ ~ ⑥ (생 략)</p>	<p>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p> <p>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